

#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발의자 및 발의경과

- 의안번호 : 3218
- 발의자 : 임규호 의원(찬성자 23명)
- 발의일 : 2025년 10월 20일
- 회부일 : 2025년 10월 23일

### 2. 제안이유

- '자율방범대의 날'이 제정됨에 따라 자율방범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고,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며, 자율방범단체의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고자 기념행사 근거를 규정함으로써,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자율방범대의 날 행사를 시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의2).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 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5.10.28. ~ 11.1.) 결과 : 의견 없음.

(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.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개정 배경

- 본 일부개정조례안(이하 ‘본 개정안’)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‘자율방범대의 날’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‘자율방범대의 날’ 기념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‘시장’)이 ‘자율방범대의 날’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자율방범단체가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, 자율방범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, 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며,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음.
-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31개의 경찰서 관할구역 내 자율방범대의 연합단체 30개의 연합대가 있으며, 자율방범대는 456개로 방범대원은 총 9,268명(2025년 9월 기준)임.

#### 〈 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현황 〉

- 근거법령 : 자율방범대법,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, 각 자치구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(25개)
- 조직 : ▲연합회(시) 1개 ▲연합대(자치구) 30개 ▲방범대(동) 456개
- 회원현황 : 9,268명(2025.9.30. 기준)
- 주요활동 : 범죄 취약지역 범죄예방활동(자체순찰, 합동순찰) 등

#### 〈 서울시 자율방범연합회 현황 〉

- ▶ 설립년도 : 2009. 2. ※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('11.3.21.)
- ▶ 임원 : 연합회장(허○○, 男), 수석 부회장, 부회장 11명, 사무처장 등
- ▶ 소재지 :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4길 5, 101호

## 〈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연합대, 방범대 현황 〉

연 번	자치구	구 성 현 황 ('25.9.30.기준)			연 번	자치구	구 성 현 황 ('25.9.30.기준)		
		연합대	자율 방범대	대 원 (명)			연합대	자율 방범대	대 원 (명)
1	종로	2	22	437	14	마포	1	16	332
2	중구	2	11	203	15	양천	1	18	460
3	용산	1	18	297	16	강서	1	19	457
4	성동	1	17	325	17	구로	1	21	476
5	광진	1	21	350	18	금천	1	14	263
6	동대문	1	15	426	19	영등포	1	28	609
7	중랑	1	21	421	20	동작	1	20	298
8	성북	2	20	432	21	관악	1	22	460
9	강북	1	12	176	22	서초	2	15	517
10	도봉	1	15	260	23	강남	1	22	404
11	노원	1	16	248	24	송파	1	24	484
12	은평	2	17	325	25	강동	1	19	357
13	서대문	1	13	251	계	25개	30	456	9,268

※ 출처 : 자치경찰위원회 별도 제출자료(2025.11.10.) 재인용.

## 나. 세부내용 검토

### 1) '자율방범대의 날' 행사 및 지원 규정 신설(안 제5조의2)

- 안 제5조의2는 시장이 '자율방범대의 날' 기념행사를 직접 실시(안 제5조의2 제1항)하거나, 자율방범단체가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(안 제5조의2제2항)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제5조의2(자율방범대의 날 행사) 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날에 자율방범 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 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제1항에 따른 기념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- 안 제5조의2 제1항은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이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조의2가 개정 (2025.8.14.) 됨에 따라 시장이 '자율방범대의 날'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,
- 안 제5조의2 제2항은 민간의 자율방범단체 기념행사를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※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(2025.8.14. 공포, 2026.2.15. 시행)

제3조의2(자율방범대의 날 제정 및 운영) ①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 행사를 한다.

- ②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다만, 현행 조례 제4조(지원 등)는 시장이 자율방범단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, 예산 지원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 지원은 추가적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- ※ 「서울특별시 자율방범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지원 등) ① 시장은 자율방범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1. 자율방범단체 활동 지원
  2. 범죄예방 캠페인과 협동 순찰 등 공익활동
  3. 자치구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
  4.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단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치구별 재정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경비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## 2) 시행일(안 부칙)

- 안 부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(2026.2.15.)을 감안하여 조례의 시행 시기를 2026년 2월 15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이는 상위법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법적 공백이나 충돌 여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임.

### ※ 법률 제21020호 개요

- 법률명 :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의결일 : 2025.7.23.
- 공포일 : 2025.8.14.

- 시행일 : 2025.2.15.
- 주요내용 :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함(제3조의2 신설).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설립하되, 시·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(제12조제1항).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'자율방범대의 날' 기념행사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자율방범대원의 사기 진작과 봉사 정신 고취라는 법령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본 개정안이 자율방범대의 활동 활성화, 지역사회 참여 촉진, 민관 협력 증진 등 공익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조례 개정 후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, 중복지원 및 타 민간단체와의 지원 형평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도 필요하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정찬일	입법조사관	채태준
------	-----	-------	-----